

# 중소기업육성기금 「서울신용보증재단」 출연금 동의안

의안 번호	2021-36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1. 4.

제 출 자 : 강서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- 시·구 협력 민생사업 무이자 융자 지원 사업의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(기금의 용도)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신용보증을 위해 “서울신용보증재단”에 900,000천원을 출연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출연대상 : 서울신용보증재단
- 출연근거
  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  -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7조
  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4조

- 출연내용 : 관내 소기업·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재원 확보  
(출연금의 12.5배수 한도 내에서 업체당 2천만 원 이내 신용보증 지원)
- 출연금액 : 금900,000천원(보증한도 : 112.5억원)
- 출연시기 : 2021.4.

#### 4. 참고사항

- 구청출연과 함께 은행출연이 진행되며 총 200억 규모의 특별신용보증 조성
  - 강서구청 900,000천원(보증한도 112.5억)
  - 우리은행 500,000천원, 하나은행 200,000천원 출연(보증한도 87.5억)

# 관 계 법 령

## 1. 지방재정법

### ■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 2. 지역신용보증재단법

### ■ 제7조(기본재산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2. 금융회사등의 출연금
3. 기업의 출연금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

## 3.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### ■ 제4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시설자금,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
2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(서울신용보증재단 등)
3.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